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 정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문화미디어산업실로 상계신설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에 필요한 실·국 등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며,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예술정책실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디지털 홍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 및 정책금융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해외 문화홍보 거점 확대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밑에 학생처를 신설하여 교학처에 학생 관리 업무를 학생처 분장사항으로 조정하고 교학처 명칭을 교무처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기획관을 두어 박물관 종합 계획 수립 및 국회와 법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

정책방송원에 대국민저작물 전면 개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1년 5개월 연장하며,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3명, 7급 2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하부조직 일부의 분장사무 조정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전통문화과·문화예술교육과·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예술인지원팀·지역문화정책과·문화기반”을 “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전통문화과·문화예술교육과·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예술인권리보호과·지역문화정책과·문화기반”으로, “예술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인지원팀장”을 “예술인권리보호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2제1항에 따라 문

화미디어산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산업정책관·콘텐츠미디어산업관·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산업정책관·콘텐츠미디어산업관·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문화산업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3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3제3항제1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저작권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3제3항제3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3제3항제38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문화미디어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문화산업기반과·문화수출통상과·미디어산업정책과·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출판인쇄독서진흥과·대중문화산업과·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과·국제문화정책과·한류지원협력과·국제문화사

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게임콘텐츠산업과장·저작권산업과장·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산업기반과장·미디어산업정책과장·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저작권정책과장·국제문화정책과장·국제문화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수출통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7.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9.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12.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3.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문화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2.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관련 사항

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11.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3.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14.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정보화·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16.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⑩ 문화수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4.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콘텐츠 해외진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해외에서의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한 사항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⑪ 미디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간행물·광고·방송영상·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출판·인쇄·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뉴미디어 · 지역언론 · 정기간행물발행업 · 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콘텐츠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8. 콘텐츠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11.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지역언론 · 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 신고에 관한 사항
13. 외국신문 ·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사 지사 · 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뉴스통신진흥회 · 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16.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18. 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9.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20. 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1. 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2. 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23.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 지원
 24.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25.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 ⑫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 · 비디오물 · 방송영상 · 애니메이션 산업(이하 이 항에서 “영상방송콘텐츠 산업”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방송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작 · 제작 · 배급 · 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3. 영상방송콘텐츠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 정보화 ·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영상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5. 영상방송콘텐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영상방송콘텐츠 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영상방송콘텐츠 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8. 영상방송콘텐츠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9.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2. 영화·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3.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4. 비디오물·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모바일·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⑭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3. 출판·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지원
 11. 출판업·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

동의 육성·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⑮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구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⑯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2. 저작권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다른 저작권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⑰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에 관한 사항
8.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⑱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
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업무
11.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⑲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6. 문화예술 관련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8.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9.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의 추진
11.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의 계획·시행
1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1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㉔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7.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㉕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2.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관련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4. 국내외 학술연구단체 간 교류 지원

5.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제10조제2항 중 “및 디지털소통관으로”를 “· 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으로”로, “및 디지털소통관은”을 “· 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외홍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제3항제3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소통협력과·소통기반과·콘텐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정책포털과·디지털소통콘텐츠과·뉴미디어소통지원과·해외홍보기획과·해외홍보콘텐츠과·해외미디어협력과 및 해외뉴스분석팀을 두되, 소통정책과장·여론과장·소통협력과장·소통기반과장·콘텐츠기획과장 및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디지털소통정책과장·정책포털과장·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해외홍보콘텐츠과장 및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⑮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조에서 “국가홍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3. 국가홍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4. 국가이미지 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해외 인식과 환경 분석
5.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지원
6. 국가홍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8.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9. 국가홍보 관련 정부·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0.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⑯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개발
2. 국가홍보 관련 간행물·자료집·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3. 한국 소개 자료의 해외 출판·제작 지원
4.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홍보 콘텐츠의 제작·배포 지원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6. 국내외 방송과 국가홍보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 지원
7.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

트 운영

8.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9.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11.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⑰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언론매체와의 홍보 협력 총괄
2. 해외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취재·보도활동 지원
3.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외신대변인협의회 운영
5. 한국 및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언론 협력에 관한 지원
7.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미디어 국가홍보 관련 활동 지원
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에 관한 협력 및 지원
9.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10.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초청에 관한 사항
11.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외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⑱ 해외뉴스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2. 국제 이슈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분석 지원
5. 해외 온라인 매체의 자료 분석
6. 외국에서의 온라인 여론 분석
7. 해외 언론매체 분석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9.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종전 14조는 제15조로 이동한다.

제14조의 제목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정책국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정책국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관광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관광산업정책관”을 “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며, 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제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제3항제11호부터 제19호까지, 제24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과·관광산업진흥과·지역관광개발과·국민관광진흥과·국제관광정책과·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융복합관광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 국제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진흥과장, 지역관광개발과장, 국민관광진흥과장, 융복합관광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광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6.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7.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8.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9.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산업 관련 통계 업무
11.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2. 테마파크업,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⑧ 지역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조정
3.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

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권 육성에 관한 사항

⑨ 국민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3.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조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걷기여행길 관리·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⑩ 국제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 간 관광교류 및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 ·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관광회의 등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0.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기관의 감독 ·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 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외래관광객 대상 환승관광 활성화 및 항공협력 관련 사항
13.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⑪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관광교통 협력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4.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개선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특구 관련 업무
9. 청와대 사랑채 및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 · 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3.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⑫ 융복합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 · 인센티브관광 · 컨벤션 · 전시 · 이벤트(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3. 음식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 ·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연관광 · 스포츠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관련된 업무

제17조의 제목 “(교학처)”를 “(교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학관리과장 및 학생과장”을 “입학관리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교무처에 교무과, 입학관리과를 둔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의 제목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담당관)”을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되,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를 “두는 보좌기관은 박물관기획관으로 하며, 박물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보좌한다”를 “사항을 분장한다”로

한다.

② 박물관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의 사항과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③ 박물관기획관 밑에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며,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 제목 “(행정운영단)”을 “(행정운영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운영단장”을 “행정운영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운영단”을 “행정운영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교육문화교류단)”을 “(교육문화교류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문화교류단장”을 “교육문화교류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문화교류단”을 “교육문화교류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민속기획과·섭외교육과·전시운영과·민속연구과·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를 “민속기획과·유물과학과·민속연구과·전시운영과·박물관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로,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민속연구과장·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을 “유물과학과장·민속연구과장·전시운영과장 및 박물관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민속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민속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임용·복무·교육

훈련·연금·급여”를 “조직·정원관리,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자료의 구입·수집·보존 및 관리
2. 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3. 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 자료의 고증
6.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7.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 생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
2. 전통과 근현대 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통과 근현대사회의 세시풍속·민속신앙·각종의례·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연구
4. 전통과 근현대사회의 관습, 조직, 교육,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연구
5. 세계 민속 생활문화 조사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발굴·

수집·고증 및 평가분석

7. 학술조사·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8.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연구 교류
 9.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⑦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상별·주제별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재·콘텐츠 개발, 교육운영·보급
3. 교육관 및 교육시설, 어린이 야외 놀이마당의 관리·운영
4. 박물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
5. 어린이 관련 전시기획 및 전시 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
6. 어린이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7.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8. 박물관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박물관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박물관협력망의 구축·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

4. 자원봉사자의 운영

5. 관람안내 및 관람사항에 관한 관리

6. 전통세시풍속의 육성·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8.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상채널 운영 및 관리

제46조제2항 중 “46명”을 “49명”으로, “5급 18명”을 “5급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관광산업정책관”을 “관광정책관”으로 한다. 제14장에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평가대상 조직)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의2제6항 중 “행정안전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을 “행정안전부”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를 “충원해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월 31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월 31일”을 “2028년 1월 31일”로 하고, 제5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⑤ 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741”을 “749”으로, 일반직 계 “734”를 “742”으로, 고위공무원단 “24”를 “25”로, 서기관 “26”을 “27”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5”를 “44”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85”를 “191”로,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3”을 “19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749”를 “757”로, 일반직 계 “742”를 “750”로, 고위공무원단 “24”를 “25”로, 서기관 “26”을 “27”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5”를 “44”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06”을 “209”으로, 행정
 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
 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86”을
 “188”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을 “9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8”을 “579”로, 일반직 계 “577”을 “578”로,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5”를 “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78”을 “579”로, 일반직 계 “577”을 “578”로,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5”를 “6”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1”을 각각 “122”로, 3급 또는 4급 이하
 “118”을 “119”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9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권리보호과	3명 (4급 1명, 5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관광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처	-	2028년 9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9조의2제5항 및 제49조의3제2항 관련)

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2

2. 문화시설기획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호서기	1

[별표 17]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0조 관련)

1. 제5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시설사무관	1

2. 제5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6월 3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주사	2

3. 제5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1

4. 제50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5. 제50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5
일반직 계	5
방송무대주사	1
방송무대주사보	2
방송무대서기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⑤ (생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전통문화과·문화예술교육과·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 <u>예술인지원팀</u> ·지역문화정책과·문화기반과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교육과장·예술정책과장·공연전통예술과장·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u>예술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⑥ ----- ----- ----- ----- <u>예술인권리보호과</u> ·----- ----- ----- ----- ----- ----- -----, <u>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서기관</u> -----.
⑦ ~ ⑬ (생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u>예술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생략) ⑮ ~ ⑱ (생략)	⑭ <u>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현행과 같음) ⑮ ~ ⑱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 ⑫ (생략)	<삭제>
<신설> <신설>	제8조3(문화미디어산업실) ① <u>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2제1항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문화산업정책관·콘텐츠미디어산업관·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산업정책관·콘텐츠미디어산업관·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신 설>

③ 문화산업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3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3제3항제1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저작권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3제3항제3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3제3항제38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문화미디어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문화산업기반과·문

<신 설>

화수출통상과·미디어산업정책과·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출판인쇄독서진흥과·대중문화산업과·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과·국제문화정책과·한류지원협력과·국제문화사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게임콘텐츠산업과장·저작권산업과장·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산업기반과장·미디어산업정책과장·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저작권정책과장·국제문화정책과장·국제문화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수출통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신 설>

<신 설>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7.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9.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12.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3.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⑨ 문화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2.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관련 사항
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11.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3.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14.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유통 구조 개선·정보화·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16.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남북 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⑩ 문화수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

<신 설>

- 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4.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국제 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콘텐츠 해외진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해외에서의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한 사항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 ⑪ 미디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간행물·광고·방송영상·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출판·인쇄·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콘텐츠미

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
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뉴미디어 · 지역언론 · 정기간
행물발행업 · 뉴스통신사업 진
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콘텐츠미디어와 관련된 남북
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에 관한 사항

7.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지원 기
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8. 콘텐츠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에 관한 사항

9. 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교육
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
성

11.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지역언론
· 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12.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뉴스통신
사업의 등록 · 신고에 관한 사
항

13. 외국신문 · 정기간행물 · 뉴
스통신사 지사 · 지국의 설치
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
에 관한 사항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뉴스
통신진흥회 · 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
된 업무

16.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18. 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
의 개선 및 지원

19.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
사 · 연구

20. 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1. 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신 설>

22. 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23.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24.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25.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 ⑫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비디오물·방송영상·애니메이션 산업(이하 이 항에서 “영상방송콘텐츠 산업”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방송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작·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3. 영상방송콘텐츠 산업의 유통 구조 개선·정보화·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영상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5. 영상방송콘텐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6. 영상방송콘텐츠 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영상방송콘텐츠 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8. 영상방송콘텐츠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9.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2. 영화·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3.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4. 비디오물·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모바일·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⑭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3. 출판·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남북 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지원
11. 출판업·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신 설>

관련된 업무

- ⑮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 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

<신 설>

- 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 ⑩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신 설>

-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2. 저작권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통상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다른 저작권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⑪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 ⑱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 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신 설>

업무

11.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 ①9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6. 문화예술 관련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8.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9.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의 추진
11.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

<신 설>

의 수립 및 추진

1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의 계획·시행
1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1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②0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신 설>

7.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㉑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2.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관련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4. 국내외 학술연구단체 간 교류 지원
5.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제10조(국민소통실) ① (생 략)

제10조(국민소통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통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통정책관·소통지원관 및 디지털소통관으로 하며, 소통정책관·소통지원관 및 디지털소통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⑥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소통협력과·소통기반과·콘텐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정책포털과·디지털소통콘텐츠과 및 뉴미디어소통지원과를 두되, 소통정책과장·여론과장·소통협력과장·소통기반과장 및 콘텐츠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

② -----

-- 소통정책관·소통지원관·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으로 하며, 소통정책관·소통지원관·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외홍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제3항제3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 소통정책과·소통협력과·소통기반과·콘텐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정책포털과·디지털소통콘텐츠과·뉴미디어소통지원과·해외홍보기획과·해외홍보콘텐츠과·해외미디어협력과 및 해외뉴스분석팀을 --, 소통정책과장·여론과장·소

로, 분석과장·디지털소통정책과장·정책포털과장·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 및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⑩ (생략)

<신설>

통협력과장·소통기반과장·콘텐츠기획과장 및 해외홍보기획과장은 -----, 분석과장·디지털소통정책과장·정책포털과장·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해외홍보콘텐츠과장 및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 ⑩ (조문번호 수정)

⑪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홍보(이하 이 조에서 “국가홍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3. 국가홍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4. 국가이미지 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해외 인식과 환경 분석
5.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지원
6. 국가홍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신설>

7.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8.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9. 국가홍보 관련 정부·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0.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⑫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개발
2. 국가홍보 관련 간행물·자료집·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3. 한국 소개 자료의 해외 출판·제작 지원
4.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홍보 콘텐츠의 제작·배포 지원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6. 국내외 방송과 국가홍보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 지원
7.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

<신 설>

- 11. 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 사이트 운영
- 8.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9.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0.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 11.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 ㉔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해외 언론매체와의 홍보 협력 총괄
 - 2. 해외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취재·보도활동 지원
 - 3.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중앙행정기관 외신대변인협의회 운영
 - 5. 한국 및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언론 협력에 관한 지원
 - 7.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미

<신 설>

- 디어 국가홍보 관련 활동 지원
- 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에 관한 협력 및 지원
- 9.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 10.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초청에 관한 사항
- 11.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외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 ㉕ 해외뉴스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 2. 국제 이슈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분석
 - 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분석 지원
 - 5. 해외 온라인 매체의 자료 분석
 - 6. 외국에서의 온라인 여론 분석
 - 7. 해외 언론매체 분석 자료의 활

	<u>용에 관한 사항</u> 8. <u>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u> 9. <u>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u>
제11조(콘텐츠정책국) ① ~ ⑦ (생략)	<삭 제>
제12조(저작권국) ① ~ ⑥ (생략)	<삭 제>
제13조(미디어정책국) ① ~ ⑤ (생략)	<삭 제>
제15조(관광정책국) ① <u>관광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u>관광정책국장</u>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관광산업정책관</u> 으로 하며, <u>관광산업정책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관광정책실) ① <u>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u>관광정책실장</u>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u>으로 하며, <u>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u>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u>관광정책관</u>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2

③ <u>관광산업정책관</u>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0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u>국장이</u>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u>국장을</u> 보좌한다. ④ <u>관광정책국</u>에 <u>관광정책과·국내관광진흥과·국제관광과·관광기반과·관광산업정책과·융합관광산업과</u> 및 <u>관광개발과</u>를 두되, <u>관광정책과장, 국제관광과장 및 관광기반과장은</u>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국내관광진흥과장, 관광산업정책과장, 융합관광산업과장 및 관광개발과장은</u>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생략) ⑥ <u>국내관광진흥과장은</u> 다음 1. ~ 6. (생략)	0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u>실장이</u>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u>실장을</u> 보좌한다. ④ <u>국제관광정책관</u>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1호부터 제19호까지, 제24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u>실장이</u>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u>실장을</u> 보좌한다. ⑤ <u>관광정책실</u>에 <u>관광정책과·관광산업진흥과·지역관광개발과·국민관광진흥과·국제관광정책과·국제관광서비스과</u> 및 <u>융합관광과</u>를 두되, <u>관광정책과장, 국제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u>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관광산업진흥과장, 지역관광개발과장, 국민관광진흥과장, 융합관광과장은</u>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	---

⑦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삭제>
⑧ 관광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삭제>
⑨ 관광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삭제>
⑩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삭제>
⑪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삭제>
<신설>	<u>⑦ 관광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u> <u>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u> <u>3.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u> <u>4.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5.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u>

<신설>	<u>6.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u> <u>7.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u> <u>8.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u> <u>9.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u> <u>10. 관광산업 관련 통계 업무</u> <u>11.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u> <u>12. 테마파크업,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u>13.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u>⑧ 지역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u> <u>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조정</u> <u>3.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u> <u>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흥자원 등</u>
------	---

<신 설>

-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권 육성에 관한 사항
- ⑨ 국민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신 설>

3.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
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조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걷기여행길 관리·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⑩ 국제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 간 관광교류 및 외래관
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
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관광회의 등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0.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기관의 감독·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외래관광객 대상 환승관광 활성화 및 항공협력 관련 사항
13.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 ⑪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관광교통 협력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4.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개선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 증진에

- 관한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특구 관련 업무
9. 청와대 사랑채 및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3.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 ⑫ 융복합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인센티브관광·컨벤션·전시·이벤트(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3. 음식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개

제14조(체육국) 제17조(교학처) ① 교학처에 교무과, 입학관리과 및 학생과를 둔다.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 및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	<u>선에 관한 사항</u> 4. 의료·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연관광·스포츠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관련된 업무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5조(체육국) 제1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입학관리과를 둔다.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u>사무관으로 보한다.</u> ③ · ④ (생략)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u>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7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담당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u>미래전략담당관</u> 을 두되, 미래전략담당관은 <u>학예연구관</u> 으로 보한다.	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① ----- ----- ----- ----- ----- 두는 보좌기관은 박물관기획관으로 하며, 박물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② 박물관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의 사항과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③ 박물관기획관 밑에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며,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보좌한다. 1~8. (생 략) 제20조(행정운영단) ① 행정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운영단에 행정지원과·디지털박물관과·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박물관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생 략)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문화교류단에 문화교류	④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운영실) ① 행정운영실장----- ----- ----- ----- -----. ② 행정운영실에 ----- ----- ----- ----- ----- ----- ----- ----- -----. ③ ~ ⑥(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 ----- ----- ----- -----. ② 교육문화교류실에 문화교류홍
--	---

홍보과·전시과·교육과·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생략)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생략)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u>민속기획과·섭외교육과·전시운영과·민속연구과·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u>를 두되, 민속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민속연구과장·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보과·전시과·교육과·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현행과 같음)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민속기획과·유물과학과·민속연구과·전시운영과·박물관교육과 및 교류홍보과</u>----- ----- <u>유물과학과장·민속연구과장·전시운영과장 및 박물관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u>-----. ③ -----.
--	---

1. <u>민속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3. (생략) 4. 공무원의 <u>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u>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10. <u>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관리</u> 11.·12. (생략) ④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⑤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⑥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⑦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⑧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 <u>민속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u>----- 2.·3. (현행과 같음) 4. ----- <u>조직·정원관리,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u> ----- 5.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0.·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신 설>

④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자료의 구입·수집·보존 및 관리
2. 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3. 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 자료의 고증
6.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7.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 생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
2. 전통과 근현대 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통과 근현대사회의 세시풍속·민속신앙·각종의례·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연구
4. 전통과 근현대사회의 관습, 조직, 교육, 경제 등의 제도 및

<신 설>

<신 설>

유적조사·연구

5. 세계 민속 생활문화 조사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고증 및 평가분석

7. 학술조사·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8.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연구 교류

9.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⑦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상별·주제별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재·콘텐츠 개발, 교육운영·보급 3. 교육관 및 교육시설, 어린이 야외 놀이마당의 관리·운영 4. 박물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 5. 어린이 관련 전시기획 및 전시 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 6. 어린이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7.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8. 박물관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립·시행 2. 박물관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박물관협력망의 구축·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 4. 자원봉사자의 운영 5. 관람안내 및 관람사항에 관한 관리 6. 전통세시풍속의 육성·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8.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상채널 운영 및 관리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8명, 6급 18명, 7급 4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1. (생략)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u>관광산</u>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49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1명, 6급 18명, 7급 4명)-----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u>관광정</u>

<u>업정책관</u> 3. (생 략) <신 설> 제49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 ⑤ (생 략) ⑤ (생 략) ⑥ 별표 16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u>행정안전부</u>, 1명(경감 1명)은 <u>경찰청</u> 소속 공무원으로 <u>각각 충원해야 한다.</u> 제50조(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2월 28일까지</u>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u>책관</u> 3.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대상 조직)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u>행정안전부</u> ----- ----- <u>충원해야 한다.</u> 제50조(한시정원) ① ----- ----- ----- ----- <u>2028년 2월 28일</u> ----- ----- -----.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1월 31일까지</u>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1월 31일까지</u>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 설> <신 설>	② ----- ----- ----- ----- <u>2027년 6월 30일</u> ----- ----- -----. ③ ----- ----- ----- ----- <u>2028년 1월 31일</u> ----- ----- -----.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7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⑤ 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7년 12월 31</u>
--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예술인지원팀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예술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예술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삭 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으로 본다.	<삭 제>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41	749	+8
·	·	·	
일반직 계	734	742	+8
고위공무원단	24	25	+1
·	·	·	
서기관	26	27	+1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u>			
<u>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u>			
<u>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u>	45	44	-1
<u>방송통신사무관</u>			
<u>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u>			
<u>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u>			
<u>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u>	185	191	+6
<u>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u>			
<u>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u>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u>			
<u>·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u>			
<u>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u>	193	194	+1
<u>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u>			
<u>기록연구사</u>			
·	·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49	757	+8
·	·	·	
일반직 계	742	750	+8
고위공무원단	24	25	+1
·	·	·	
<u>서기관</u>	26	27	+1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u>			
<u>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u>			
<u>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u>	45	44	-1
<u>방송통신사무관</u>			
<u>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u>			
<u>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u>			
<u>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u>	206	209	+3
<u>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u>			
<u>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u>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u>			
<u>·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u>			
<u>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u>	186	188	+2
<u>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u>			
<u>기록연구사</u>			
·	·	·	

<u>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u>	<u>91</u>	<u>93</u>	+2
<u>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u>			
<u>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u>			
<u>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	.	.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78		579		+1
		.	.		.		
		일반직 계	577		578		+1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5		6		+1
		.	.		.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78		579	+1	
		·	·		·		
		일반직 계	577		578	+1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5		6	+1	
		·	·		·		

[별표 1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21		122	+1	
		·	·		·		
		일반직 계	121		122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118		119	+1	
		·	·		·		